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
CONSUS ASSET MANAGEMENT CO.,LTD.

우)140-8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, KDB생명타워 18층 /전화(02)2077-5042/전송(02)2077-5069/담당:컴플 부장 이재범

문서번호 : 칸서스 컴플 제2015 – 06 호 2015.06.26

수 신 : 금융감독원장

참 조 :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총괄팀

제 목 : 경영사항공시 –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건

1.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2015년 6월 24일 확인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.

붙 임 소송 등의 제기·신청의 건 (협회 규정 양식) 1부
변경신청서 사본 1부 끝.

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
대표이사 김 영 재

소송 등의 제기·신청 (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)

1. 사건의 명칭	손해배상금 청구의 소
2. 원고 · 신청인	우리은행 · 법무법인 화우
3.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	청구취지: 칸서스 사할린 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한 칸서스 자산운용은 원고에게 금 30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1.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당일까지는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(금원)지급하라 청구원인: 이 사건 투자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투자금 반환청구
4. 관할법원	서울남부지방법원
5. 향후대책	책임감 있는 소송대응책 및 처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.
6. 확인일자	2015년 6월 24일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피고는 이 사건 투자신탁과 관련하여 간접투자재산의 관리에 대한 선관의무 및 투자자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및 보호의무 등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장